##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(박기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450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:박기열 의워(1명) 자 :권수정, 권영희, 김경영, 찬 성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, 신정호, 양민규, 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전병주, 전석기, 최 선, 최웅식, 한기영, 홍성룡. 황규복 의원(29 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의 확인서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나 11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생년월일(10개 광역자치) 또는 차량번호만(1개 광역자치)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대체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"주민(사업자)등록번 호"를 "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"로 하고 운전자란 중 "주민등록번 호"를 "생년월일"로 변경 함. (별지 서식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서식 확인서 갑지 및 을지의 소유자란 중 "주민(사업자)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"로 하고 운전자란 중 "주민등록번호"를 "생년월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		
[별지 서식]					[별지 서식]						
<u>확 인 서</u>					확 인 서						
(갑)		(행정기관 보관용)		(갑) (행정기관 보관용					보관용)		
자동차등록번호		차명(인 증번호)									
차량총중량(kg)		배기량 (cc)	형식 및 년식								
소유자	성명(상호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	소유자				<u>생년월일</u> (사업자등록)		
	주 소		전화번호								
운전자	성 명		<u>주민등록번호</u>		운전자				<u>생년월</u> 일	일	
	주 소		전화번호	· - - - -							
이하 생략					이하 생략						
확 인 서					<u>확 인 서</u>						
(을) (운전자 보관용)				(을) (운전자 보관용)							
자동차등록번호		차명(인 증번호)									
차량총중량(kg)		배기량 (cc)	형식 및 년식								
소유자	성명(상호)		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	소유자				<u>생년월일</u> (사업자등록	_	
	주 소		전화번호							-	
운전자	성 명		<u>주민등록번호</u>		운전자				<u>생년월</u>	일	
	주 소		전화번호	·번호							
이하 생략					이하 생략						